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1년 3월)

2021. 3 / 저작권상담팀(☎ 1800-5455)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

-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 (월간 주요 상담사례)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제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순위	제작물 종류별	기타
1	영상	이용
2	폰트	등록
3	사진	제작
4	캐릭터	유튜브
5	영화	침해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클래식L’ 글꼴로 작성

<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

- (영상) 리조트 내의 잔디밭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상을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가?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을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은 가능하다.¹⁾
 - 다만, 리조트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용이 제한되는 장소(「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²⁾

- (폰트)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명함을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폰트 저작권 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받았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폰트 도안(글자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³⁾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⁴⁾
 - 명함을 스캔하여 이용하는 것은 폰트 도안을 이용한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진)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⁵⁾ 따라서 드론으로

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2)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3)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4)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5)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촬영한 사진도 촬영자의 창조성이 발휘되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

○ (캐릭터) 네일샵에서 네일아트에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이용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에,⁶⁾ 저작권자에게 캐릭터 이용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영화) 학교에서 영화 포스터를 벽화로 그려서 이용하려하는데 교육목적의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가?

-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위해 필요한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부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⁷⁾ 벽화나 환경미화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수업목적에 해당하지 않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기타 주요 상담 >

○ (이용)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고안하였는데 이러한 기법이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⁸⁾ 따라서 기법과 같은 아이디어의 영역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기법을 이용해 창작한 그림 등의 결과물이 저작물로

6) 저작권법 제46조.

7) 저작권법 제25조.

8)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서 보호받을 수 있다.

○ (등록) 허위로 저작권을 등록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 거짓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⁹⁾

○ (제작) 박물관이 소유한 신라시대 그림을 촬영 후 상품으로 제작 및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림을 소유한 박물관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 현행 저작권법상 개인 저작물은 개인 사후 70년,¹⁰⁾ 단체의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까지만 보호되기에,¹¹⁾ 신라시대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그림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소장처인 박물관 측으로부터 촬영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유튜브) 외국 유튜브 영상의 내레이션을 번역한 후, 번역한 자막을 영상에 넣어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¹²⁾ 저작권법상 번역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¹³⁾ 자막을 넣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하며,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9)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10) 저작권법 제39조.

11) 저작권법 제41조.

12) 저작권법 제46조.

13)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침해) 타업체가 유사한 디자인의 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가?
 - 저작권상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된다.¹⁴⁾ 다만, 의자 등 물품의 기능적, 실용적 측면과 분리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 김포시의 '김포평화바탕체' 글꼴로 작성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21년 3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저작권법 제2조 제15조.